사천시 고시 제2021- 91호

#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2021년 4월 24일

사 천 시 장

## 1.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집합제한

1) **적용대상** :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

| 구분 | | 대상 시설 |
|---|---|---|
| **중점 관리 시설 (11종)** | **집합 제한** | ▲유흥시설 5종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/무도장 포함) ▲홀덤펍<br>▲노래연습장 ▲실내 스탠딩공연장 ▲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<br>▲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무인카페) ▲파티룸 |
| **일반 관리 시설 (15종)** | **집합 제한** | ▲PC방 ▲결혼식장 ▲장례식장 ▲학원(교습소 포함) ▲직업훈련기관 ▲공연장<br>▲영화관 ▲놀이공원·워터파크 ▲오락실·멀티방 ▲목욕장업 ▲실내체육시설<br>▲이·미용업 ▲대형마트 ▲상점,·마트 (300㎡이상) ▲독서실·스터디카페 |
| **기타 시설 (2종)** | **집합 제한** | ▲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<br>▲숙박시설 |

2) **처분당사자** : 사천시내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3) **처분내용** :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사항 *시설별 방역수칙 참고

## 4)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
| 구 분 | |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|
|---|---|---|
| 중점관리시설 | 공통 | ▸ 마스크 착용,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의무, 환기·소독,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|
| | 유흥시설 5종, 홀덤펌 | ▸ 22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br>▸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<br>▸ 전자출입명부 작성의무(유흥종사자 포함, 수기명부 불가)<br>▸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<br>▸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 착용 |
| |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| ▸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<br>▸ 22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<br>▸ 노래·음식 제공 금지 |
| | 노래연습장 | ▸ 22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<br>▸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수기명부작성 불가)<br>▸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<br>▸ 음식 섭취 금지<br>▸ 이용한 룸과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|
| | 실내 스탠딩 공연장 | ▸ 22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<br>▸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1m 거리두기 |
| | 식당·카페 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무인카페 포함) | ▸ 식당·카페 모두 22시 ~ 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<br>▸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<br>▸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<br>▸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|
| | 파티룸 | ▸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br>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(개별 방 면적대비 8㎡당 1명)<br>*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br>▸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 |

| 구 분 | |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|
|---|---|---|
| 일반관리시설 | 공통 | ▸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,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|
| | 실내체육시설 | ▸22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br>▸음식 섭취 금지<br>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|
| | 결혼식장/장례식장 | ▸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|
| | 목욕장업,<br>오락실·멀티방 등 | ▸음식 섭취 금지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| | 영화관, 공연장 | ▸음식 섭취 금지 ▸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|
| | PC방 | ▸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<br>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|
| | 학원(독서실 제외)<br>·교습소·<br>직업훈련기관 |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)<br>▸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<br>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<br>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<br>실시, 22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|
| | 독서실·스터디카페 | ▸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<br>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<br>▸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하고, 22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|
| | 이·미용업 |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<br>▸음식 섭취 금지 |
| | 놀이공원·워터파크 | ▸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 |
| | 대형마트 | ▸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<br>▸마스크 착용<br>▸주기적 환기·소독<br>▸시식·시음·견본품 사용금지<br>▸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·의자 등) 이용금지 |
| | 마트·상점<br>(300㎡ 이상) | ▸마스크 착용<br>▸주기적 환기·소독 |
| 기타시설 | 공통 | ▸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,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|
| | 체험방형태의<br>의료기기 판매업소 | ▸의료기기 대수 당 1/2 이용인원 제한, 마스크 착용 등<br>▸출입자 명부 작성,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 등 사용 의무 |
| | 숙박시설 | ▸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<br>▸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<br>▸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<br>▸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|

※ 단, 음식섭취 금지하더라도 물·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

## 2.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별 방역수칙

### 1) 적용대상

| 구 분 | 내 용 |
|---|---|
| 마스크 착용 의무화 | ▸실내* 전체<br>▸위험도 높은 실외**활동<br>* (실내)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, 가정 내, 개별공간(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)은 제외<br>** 집회·시위장, 스포츠 경기장 등 |
| 모임·행사 | ▸100인 이상 금지<br>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<br>-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<br>< 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 ><br>▴**(행사)**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 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싸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<br>▴**(사적 모임)**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회갑연, 동호회, 돌잔치, 워크샵, 계모임 등<br>▴**(각종 시험)**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<br>*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 |
| 스포츠 관람 | ▸10% 이내로 관중 입장 |
| 국공립시설 | ▸경륜·경정·경마·카지노의 경우 운영 중단<br>▸이외 시설은 30%로 제한 |
| 사회복지시설,어린이집 | ▸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유지 |
| 종교활동 | ▸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% 이내 제한<br>▸종교시설 주관의 대면 모임·식사 금지 |
| 직장근무 | ▸공공기관 적정비율(예 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, 점심시간 시차운영,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, 민간 권고<br>▸고위험 사업장*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거리두기, 환기·소독 의무화 *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 |
| 교통시설 이용 | ▸마스크 착용 의무화,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(차량)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(국제 항공편 제외) |

### 2) **처분당사자** : 사천시내 각 시설·장소 등의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### 3) **처분내용** : 방역수칙 의무화(집합제한)

3. 처분근거

-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, 2의2, 2의3, 2의4

-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

-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

4. 처분기간 : **2021. 4. 26.(월) 0시 ~ 2021. 5. 2.(일) 24시, 1주간**

※ 처분기간 종료 후에는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름

5. 처분사유 :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**2021 4. 26.(월) 0시부터**

**7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**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**8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**

1)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시설의 관리·운영자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의2, 2의3, 2의4,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,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2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의한 집합제한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· 조사 ·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## 9. 소관부서별 거리두기 담당자 문의처

| 구 분 | 담당부서 | 연락처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▸ 유흥주점(클럽, 룸살롱 등) ▸ 단란주점 ▸ 헌팅포차<br>▸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 | 보건위생과 | 831-3616 | |
| ▸ 콜라텍 | 소방서<br>예방안전과 | 830-9232 | |
| ▸ 노래연습장 ▸ PC방 ▸ 오락실·멀티방 ▸ 영화관 | 문화체육과 | 831-2710 | |
| 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| 지역경제과 | 831-3068 | |
| ▸ 공연장 | 문화체육과 | 831-2710 | |
| ▸ 놀이공원, 워터파크 | 관광진흥과 | 831-2726 | |
| ▸ 실내체육시설 | 문화체육과 | 831-2410 | |
| ▸ 결혼식장 | 여성가족과 | 831-2665 | |
| ▸ 장례식장 | 노인장애인과 | 831-2691 | |
| ▸ 목욕탕·이·미용업·숙박업 | 보건위생과 | 831-3612 | |
| ▸ 학원, 독서실 | 평생학습센터 | 831-2585 | |
| ▸ 마트·백화점 | 지역경제과 | 831-3060 | |
| ▸ 스터디카페 | 평생학습센터 | 831-2585 | |
| ▸ 실내 스포츠 경기장 | 문화체육과 | 831-2410 | |
| ▸ 체험방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| 치매관리과 | 831-3741 | |